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3,521,939	15,105,658
일반회계	469,019,449	14,070,583
특별회계	34,502,490	1,035,075
공기업특별회계	6,393,682	191,81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6,393,682	191,810
기타특별회계	28,108,808	843,26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10,161	21,305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046,859	211,406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15,066	33,45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12,626	24,379
수질개선 특별회계	9,775,255	293,258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6,282,519	188,47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66,322	70,990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734,07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700,000천원으로 하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 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 (예산계상 및 이월조치) 할 수 있다.